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강화 등〉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869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
2. 공익신고한 경우 형의 감면	5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9

I.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선민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4. 9. 10.
- (3) 회 부 일 : 2024. 9. 1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언론 등을 통하여 확인된 바, 이러한 행위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음.

특히, 수술실은 환자의 의식이 없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의사-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는 공간이므로,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 감시와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면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여 그 결과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하여 상향된 법정형을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87조의2(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7조의2(벌칙)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 ----- ----- ----- ----- ----- --.
<신설> <신설>	1. 제12조제3항1)을 위반한 죄 2.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죄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검토의견

□ 현행법은 제27조제1항²⁾을 위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³⁾을 위반한 교사범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고⁴⁾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향된 법정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교사 포함)로 상해·중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있는데, 상향 수준은 현행 제87조의2제1항(제12조제3항 위반: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 또는 환자에 대한 폭행치사상죄)과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음.

즉, 무면허 의료행위(교사 포함)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형법상 고의에 의한 상해·중상해·살인의 경우에 준하는 높은 법정형이 적용되게 됨.

-
- 1)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 3)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한편 무면허 의료행위(교사)에 대하여는 면허정지, 의료기관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함(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의료기관) 영업정지 3개월, (의료인) 면허정지 3개월의 사유에 해당함)
또한, 2020.12.29.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 (임의적) 취소사유로 추가하였음(취소 시 3년내 재교부 금지).

<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형량 비교 >

		무면허의료행위(교사 포함)			
			상해	중상해	사망
현행		(의료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건범죄단속법) : 영리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개정안		(현행과 같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과실)		<과실치상>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과실치사>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의)		<상해>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살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치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이미 환자와의 근본적인 계약·신뢰 관계를 위반하여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 할 것인바, 그로 인한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범에 준하는 불법성을 인정하여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현행 「의료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⁵⁾에 따른 처벌 조항으로 충분하다는 의견⁶⁾도 제시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공익신고한 경우 형의 감면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 또는 교사범이 스스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7조의2(벌칙) ①·② (생략) <u><신설></u>	제87조의2(벌칙) ①·② (생략) ③ <u>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u>

5)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6)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2) 검토의견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⁷⁾는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 형식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교사 포함)를 한 자가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필요적 감면 규정으로 명시함으로써 임의적 감면 제도 하

7)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⑥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⑦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징계 등이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 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8)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199, 판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따라서 설령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2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문별 해설서」

* 책임 감면제도의 취지

상급자나 대표자의 지시 또는 경제적 이익 보장으로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하였으나 나중에 스스로 이를 시정하고자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 책임이 감면될 수 있다.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책임을 감면하는 이유로는 첫째, 공익신고자등이 상급자 지시 등으로 부득이하게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한 것일 수도 있고, 둘째,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과거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공익침해행위가 드러난 것이므로 자진신고 유도를 통한 공익침해행위 시정을 위해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에서의 자진 신고자에 대한 형사책임 부담의 가능성을 없앴으로써 내부 감시를 활성화하여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의료기관에서의 무면허 의료행위, 특히 폐쇄된 수술실 등에서 벌어지는 대리수술 등의 불법행위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21년 8월 「의료법」 개정(2023년 9월 25일 시행)을 통하여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전체를 대상으로 수술실 내부에 CCTV(폐쇄회로 방식)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 바 있음.⁹⁾

- 9)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2.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제2항에 따라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게 하거나 제공(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⑥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24년 10월 현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 2,413개소에 모두 CCTV 설치가 완료되었음.¹⁰⁾

□ 한편, 최근에도 의료기기 영업사원,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사례가 적발되는 등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¹¹⁾ 수술실 CCTV 제도 운영에 있어서 환자나 보호자가 미리 요청할 때만 촬영을 진행하는 점,¹²⁾ 촬영 요청시에도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수술실 CCTV 설치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¹³⁾

□ 개정안과 같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형벌 감면을 법률로 보장함으로써 자진 신고가 활성화될 경우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수술실 내 환자 안전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신고자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피신고자보다 더 큰 경우에도 예외 없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등 구체적 사건의 개별적 특성에 대하여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⑧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제2항에 따른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제5항에 따른 열람·제공의 절차, 제9항에 따른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⑪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10)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종합병원 313개소, 병원 856개소, 치과병원 18개소, 요양병원 1개소, 의원 1,161개소, 치과의원 17개소임(자료: 보건복지부).

11) “대학병원서 버젓이 ‘대리수술’자행…수술실 CCTV 설치 유효성 ‘논란’”, 메디코파마뉴스, 2024.9.12.

12) 서미화 의원, 2024년 보건복지부 대상 국감시 “의료기관이 수술 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수술실 CCTV 촬영에 관해 고지할 의무가 없어 입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13) “수술 직전 CCTV 촬영 요구했는데…결국 수술 안 받은 이유는?”, KBS뉴스, 2024.10.11.

- 참고로, 필요적 형 감면을 규정한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주로 예비·음모의 죄에 있어서 ‘자수’한 경우 등에 대하여 필요적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¹⁴⁾

□ 따라서 무면허 의료행위(교사 포함)에 대한 형벌 강화 조치 또는 수술실 CCTV 제도의 운영상 개선 조치 등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다른 정책 수단들의 진행 상황 및 필요적 형 감면 제도 도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수용)

-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여 환자 안전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은 내부 고발이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자진 신고 유도를 위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면제할 필요가 있음.¹⁵⁾

2) 대한의사협회(신중검토)

- 현행 의료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충분히 과중한 처벌이 가능함에도 추가하여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14) [참고자료]필요적 형 감경·면제 관련 입법례 참조

15)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면제(사실심법원의 재량사항)

낮으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감경 및 면제는 의료기관 내부 관계자의 허위 고소·고발을 남발하게 하여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유발할 소지가 다분함.

3) 대한한 의사협회(수정수용)

- ☐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의료법 제27조제1항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할 뿐 아니라 면허외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의료인의 면허외 의료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87조의2제1항제2호 중에서 제27조제1항을 삭제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대한간호협회(찬성)

- ☐ 의료계 신뢰성 제고를 위해 수술실 내 불법행위에 대한 내부 감시와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5)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일부수용)

- ☐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현재 의료법 제87조의2(벌칙)제2항2호 및 3호에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미 규정되어 있는바, 의료법 제12조제3항의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의 처벌 수준과 동등하게 강화되어야만 하는지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한국환자단체연합회(찬성)

- 무면허의료행위 및 교사 금지 규정을 위반해 사망 또는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고, 의료인 면허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므로 형사처벌을 가중할 필요가 있음.
- 수술실은 전신마취 시 의식이 없고,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되며, 수술실 내부의 범죄, 비윤리적 행위는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공범이므로, 이러한 은밀성과 공범성으로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가 근절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의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494

[참고]	필요적 형 감경·면제 관련 입법례
-------------	---------------------------

○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제47조(벌칙) ① 정당한 권한 없이 방사성물질, 핵물질, 핵폭발장치, 방사성 물질비산장치 또는 방사선방출장치를 수수·소지·소유·보관·제조·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여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하거나 재산·환경에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사보타주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⑩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자수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⑦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陰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하기 전에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刑)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한다.

○ 공직선거법

제262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제230조제1항·제2항, 제231조제1항 및 제257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중 금전·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후보자나 그 가족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제2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2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폭행·협박·상해·살인죄) ①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협하게 할 목적으로 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착수(着手)하기 전에 자수한 사람은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4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58조 또는 제59조*의 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후보자 및 그 배우자
2.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3.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4.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 국가보안법

제16조(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 농업협동조합법

제17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50조(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0조의2(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 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1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시 행위제한)

○ 새마을금고법

제8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제22조제2항*(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한 자
2.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83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53조*(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조의2*(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중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 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제53조의2(기부행위의 제한)